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72
----------	-------

발의연월일 : 2025. 8. 20.

발 의 자 : 박지혜 · 김 윤 · 이훈기
이용우 · 황명선 · 양부남
오세희 · 박지원 · 이광희
박선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
되,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의 유상할당 비
율이 10% 수준이고,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주로 받
아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간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탄소비용

지불 정도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수출중심인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여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를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은”을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배출권거래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로,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업체 중 국외 탄소배출 규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업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유상할당 목표비율 준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의 일부를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을 “유효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제27조제1

항에 따라 제출하는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u>비율(이하 “무상 할당비율”이라 한다)</u>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 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 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u> ----- ----- -----. ----- <u>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u> 은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 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u>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u>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제29조(상쇄) ①·② (생략)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같음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거래제-----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
비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

-----. 다만, 제1호 및 제2
호의 업체 중 국외 탄소배출
규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업의 업체에 대
하여는 제4항에 따른 유상할당
목표비율 준수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
출권의 일부를 유상으로 전환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제29조(상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유효기간을

④ 할당대상업체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